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0-13호
2020. 2. 21.(금)

차 례

조 례(5)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30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조례 제1431호)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조례 제1432호) ·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433호)1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조례 제1434호)23

고 시(2)

- 도시계획시설사업(산탄진흥계소·비가림시설 증축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고시 제2020-21호) ·27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22호)29

공 고(5)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161호)30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공고 제2020-165호)36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공고 제2020-166호)41
- 2020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교사(기초학습분야) 채용 공고(공고 제2020-168호) ·46
- 도시계획시설(용전근린공원조성)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공고(공고 제2020-174호) ·52

입 법 예 고 (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157호)5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공고 제2020-169호)70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3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당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로 하며 사용일시”
를 “사용일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u>건당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로 하며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u></p>	<p>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사</u> <u>용일시</u>----- ----- ----- ----- -----.</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금액의 제한 없이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내용의 금액 제한 규정을 삭제함
(제5조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3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
덕구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
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

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해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제4조).
- 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및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3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공개한다.
- 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벤치, 미디어폴· 자전거 보관대
2.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3. 공원 ·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안내표지판·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물· 미술작품, 조형물·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 하천시설물
4. 청소 ·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의 시설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3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

적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시·구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행정안전부나 감사기관 등에서 변경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한 경우

4. 사업변경,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계약서 작성,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주무부서

의 장이 추진하며,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

·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인 때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직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출자·출연기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범위를 정함(제6조).
-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3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

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사무직원) ①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19.8.6.)에서 위임하고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함(제3조).
- 적극행정 총괄부서와 인사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달라 원활한 심의를 위해 별도의 사무직원을 두도록 함(제4조).
- 수당 및 운영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신탄진휴게소-비가림시설 증축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36-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광로2-15호선/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36-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광로2-15호선/신탄진휴게소)
 - 명 칭 : 신탄진휴게소 주1동 증개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부지면적 81,765㎡
 - 연면적 4,765.55㎡(기존 4,364.96㎡, 금회 증 400.59㎡)
 - 주9개동, 부1개동, 부속7개동

- 주1동(본동) 캐노피 증축(388.68m² → 400.59m²) / 증 11.91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도로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9.9.6 ~ 2020. 8. 31.

6. 사용할 토지조서

- 지목별 토지현황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1	대덕구 상서동	236-1	도	19,354.0	243.93	한국도로공사	-
2	대덕구 상서동	373-21	도	19,854.0	77.54	국(국토부)	
3	대덕구 상서동	산47-25	도	99.0	79.12	국(국토부)	
		계		39,307.0	400.59		

.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오정동 309-6, -16	오정로75번길 54-12	2020. 2. 21.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369-12	오정로23번길 28-2	2020. 2. 21.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비래동 144-11	비래서로81번길 11	2020. 2. 21.	건물신축	비래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송촌동 458	송촌북로20번길 27-14	2020. 2. 21.	건물신축	송촌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평촌동 536-4	덕암로182번길 18	2020. 2. 21.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목상동 210-7	대덕대로1508번길 30	2020. 2. 21.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압류 예고,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0. 02. 21. ~ 2020. 03. 6.(14일간)

4. 기타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지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

- 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8042-608-6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연번	소유자(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김민*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62, 1**동 16**호(와동, 현대아파트)	45다86**	2019.11.30 19:29:48	와동 현대아파트 102동 105호 앞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2	현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70, 1**동 4**호(연축동, 주공아파트)	90마52**	2019.10.31 04:42:10	대덕구 연축주공아파트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3	황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15번길 54, 8**호(송촌동, 평원아파트)	18도18**	2019.11.01 00:13:36	송촌동 평원아파트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4	서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4번길 53, 2**호(목상동)	92노33**	2019.11.04 09:05:44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5	오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87, 1**동 22**호(석봉동, 금강로하스엘크루)	21라61**	2019.11.04 11:25:10	석봉동 금강로하스엘크루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6	임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78, 1**동 6**호(법동, 보람아파트)	24무76**	2019.11.06 13:38:03	송촌동 459-3 마리스빌딩	2020.02.07	2020.02.10	이사불명
7	김경*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26, 1**동 7**호(도마동, 경남아파트)	31러71**	2019.11.07 09:16:05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8	최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741, 1**동 10**호(전민동, 세종아파트)	24누08**	2019.11.09 12:13:22	오정동농수산물시장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9	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90번길 2*-1*(연축동)	95다18**	2019.11.09 17:19:36	오정동농수산물시장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10	조문*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금당로10번길 63, 2**호(조원동, 메가타워)	52하38**	2019.10.12 03:09:39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2020.02.07	2020.02.12	폐문부재
11	조문*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금당로10번길 63, 2**호(조원동, 메가타워)	52하38**	2019.10.22 08:24:44	석봉동금강엑슬루타워	2020.02.07	2020.02.12	폐문부재
12	조문*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금당로10번길 63, 2**호(조원동, 메가타워)	52하38**	2019.10.29 08:18:53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2020.02.07	2020.02.12	폐문부재
13	윤성*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46번길 4, 2**호(홍도동)	10도16**	2019.11.19 16:09:02	오정동 한남대학교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14	이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2번길 11-33, 2**호(원신흥동)	대전대덕마44**	2019.11.160 8:29:42	중리동 한촌공원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15	박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29, 2**(괴정동, 에셀빌)	08어29**	2019.11.23 16:49:53	평촌동 100 KT&G신탄진공장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16	이지*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50길 1**-*(비산동)	68호55**	2019.11.11 13:57:33	송촌동 460-4 송촌프라자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17	남수*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45, 4**동 5**호(오산동, 주공아파트)	37보91**	2019.10.22 08:21:09	오정동 706-1부근 오정교회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18	김수*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자모2길 5**-*	39보40**	2019.10.02 14:20:08	대상베스트코 오정점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19	김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개목7길 10, 1**호(봉명동, 신비주막)	46루64**	2019.10.07 15:10:28	신일동 1684-39 테크노빌딩	2020.02.07	2020.02.13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20	곽태*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341번길 78, 2**호(괴정동)	16소72**	2019.10.18 10:08:07	송촌동 460-3 다이소송촌점 지하주차장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21	유정*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9번길 15, 3**호(용전동)	90수08**	2019.10.19 11:50:06	오정동농수산물시장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22	이승*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76번길 9-24 2**호(용전동)	54허83**	2019.09.09 09:09:18	오정동 대전병원	2020.02.07	2020.02.17	폐문부재
23	김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로 111-9, 1**호(용계동)	07호15**	2019.10.12 22:03:43	송촌동 478-1 송촌공영주차장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24	윤성*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46번길 4, 2**호(홍도동)	10도16**	2019.10.22 15:16:09	오정동 한남대학교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25	김지*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02, 3**동 3**호(갈마동, 갈마아파트)	57러75**	2019.10.28 16:08:17	오정동 449-1 문화빌딩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26	서승*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삼방길 *-**	06구64**	2019.10.28 17:15:04	비래동주민센터	2020.02.07	2020.02.10	이사불명
27	김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남로4*번길 1*(중리동)	67소80**	2019.10.28 13:12:27	중리동 먹자골목 주차장	2020.02.07	2020.02.14	폐문부재
28	임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번길 2*(덕암동)	41두37**	2019.12.22 13:20:39	중리동372-30 중리시장공영주차장	2020.01.07	2020.01.14	폐문부재
29	주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110, 1**동 7**호(명지동, 명지 더 에듀 팰리스 부영)	19조92**	2019.12.22 15:54:49	오정동농수산물시장	2020.01.07	2020.01.17	폐문부재
30	최정*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관대길39번길 6-*	36주80**	2019.12.22 14:56:27	갑천하상주차장	2020.01.07	2020.01.14	폐문부재
31	조영*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730번길 11, 1**호(가양동)	04나36**	2019.12.20 15:29:50	갑천하상주차장	2020.01.07	2020.01.15	폐문부재
32	손광*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1**동 1**호(읍내동, 현대아파트)	17라83**	2019.12.24 15:30:59	오정동농수산물시장	2020.01.07	2020.01.14	폐문부재
33	황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529, 1동 13**호(선화동, 선화II 참좋은아파트)	60저89**	2019.12.26 20:20:29	송촌동 450-5 부근 은성빌딩	2020.01.07	2020.01.15	폐문부재
34	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신촌*길 9*	11저82**	2019.12.26 22:55:09	와동 111 현대아파트	2020.01.07	2020.01.15	폐문부재
35	김완*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00, 1**동 10**호(평촌동, 행복한마을아파트)	18저65**	2019.12.27 01:06:17	평촌동 540-1 행복한마을아파트	2020.01.07	2020.01.14	폐문부재
36	김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0번길 77, 1**동 2**호(목상동, 평화로운아파트)	45거07**	2019.12.29 07:28:32	목상동 207-25 평화로운아파트	2020.01.07	2020.01.14	폐문부재
37	김희*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36*번지 1*/	27가69**	2019.12.30 06:19:57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2020.01.07	2020.01.15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38	성락*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들4길 56, 3**호(관평동)	12오40**	2019.12.31 11:53:32	신일동 1689-1 한온시스템	2020.01.07	2020.01.14	폐문부재
39	이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죽로5*번길 *(송강동)	41우82**	2019.12.31 15:16:05	신일동 1689-1 한온시스템	2020.01.07	2020.01.14	폐문부재
40	(주)이엠에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90, 2층 2**호(연희동)	71거78**	2020.01.03 17:09:53	상서동 산 47-25 신탄진휴게소	2020.01.13	2020.01.20	폐문부재
41	서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4번길 53, 2**호(목상동)	92노33**	2020.01.05 12:53:48	석봉동 770 금강엑슬루타워	2020.01.13	2020.01.20	폐문부재
42	김민*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394, 1동 6**호(비래동, 현대아파트)	10너15**	2020.01.05 08:58:57	비래동 47-1 비래동현대아파트	2020.01.13	2020.01.14	폐문부재
43	강창*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327번길 35, 3**호(괴정동, 필하우스)	11부08**	2020.01.04 22:49:56	덕암동 42-12 부근 에코빌리지	2020.01.13	2020.01.20	폐문부재
44	강지*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39번길 55, 4**호(삼정동, 성진빌라)	09더07**	2020.01.06 21:28:58	덕암동 42-7 부근 에코빌리지	2020.01.13	2020.01.21	폐문부재
45	김승*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90번길 15, 1**동 12**호(관저동, 관저리슈빌)	62더56**	2020.01.08 10:53:11	송촌동 525 부근 은혜프라자	2020.01.21	2020.01.28	폐문부재
46	김용*	대전광역시 동구 흥도로46번길 12-6, 2**호(용전동)	대전60바98* *	2020.01.11 23:29:02	중리동 462 부근 먹자골목	2020.01.21	2020.01.28	폐문부재
47	윤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동 23**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26하05**	2019.11.21 19:18:39	석봉동 781부근 금강엑슬루타워	2020.01.21	2020.01.23	폐문부재
48	김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번길 2*(복정동)	96마28**	2020.01.13 21:09:10	중리동 250-3 부근 상록아파트	2020.01.21	2020.01.23	주소불명
49	박숙*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114번길 60, 3**동 12**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74저66**	2020.01.19 10:55:57	선비마을3단지	2020.01.29	2020.02.05	폐문부재
50	최연*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신촌2길 *2	11저82**	2020.01.21 08:43:45	와동111현대아파트	2020.01.29	2020.02.06	폐문부재
51	선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86, 3**호(신림동)	86나94**	2020.01.20 17:52:22	오정동농수산물시장	2020.01.29	2020.02.06	폐문부재
52	남세*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로97번길 6-38, 2**호(덕명동)	14노97**	2020.01.22 10:01:01	대덕구청	2020.01.31	2020.02.07	폐문부재
53	허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동 15**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03부49**	2020.01.23 17:53:07	송촌동 선비아파트 102동 7,8라인	2020.01.31	2020.02.07	폐문부재
54	최호*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203번길 1, 2**호(판암동)	53로84**	2020.01.24 13:04:12	중리동 471 부근 주차장	2020.01.31	2020.02.07	폐문부재
55	신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14, 2**호(가경동)	38두12**	2020.01.25 15:55:32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2020.01.31	2020.02.03	수취인불명
56	유경*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일양길 3**	45고62**	2020.01.23 16:35:55	오정동 평화로운아파트	2020.01.31	2020.02.07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57	김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521번길 79, 1**동 6**호 (중리동, 영진상록아파트)	33호99**	2020.01.08 06:01:01	중리동 250-3 부근 상록아파트	2020.02.03	2020.02.10	폐문부재
58	이창*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78, 1**동 13**호(법동, 보람아파트)	22너41**	2020.01.18 04:37:51	법동 보람이편한아파트 부근	2020.02.03	2020.02.10	폐문부재
59	이철*	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67번길 3*-(용운동)	02모01**	2020.01.26 18:50:09	오정동농수산물시장	2020.02.03	2020.02.06	폐문부재
60	조영*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30번길 11, 1**호(가양동)	04나36**	2020.01.16 16:47:36	대화동 갑천하상주차장	2020.02.03	2020.02.06	폐문부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0년도 소하천(덕암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덕암천	소하천(덕암천) 정비사업	상서동 178-2	상서동 175-2	-	143		'20. 3	'20. 12.	재해 예방	수용·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별첨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계재생략)
2. 위치도 (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붙임)

※ 열람장소 : 대덕구청 건설과 (tel : 042-608-5223)

※ 열람기간 : 2020. 2. 21. ~ 2020. 3. 9.

소 하 천 정 비 시 행 계 획

-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소하천(덕암천)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소하천인 덕암천에 대하여 노후제방 등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 요 : 사업의 면적 2,084㎡, 연장 143.0m
 - 위 치 : 대덕구 상서동 175-2번지 일원
-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착공일 : 2020. 3.
 - 준공일 : 2020. 12. 31.
- 실시설계도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도시국 건설과에 비치
-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 사업비(재원 및 연도별)

구 분	재 원 별(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2020년도	382,000	-	100,000	282,000	

사 용 또 는 수 용 할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소하천(덕암천) 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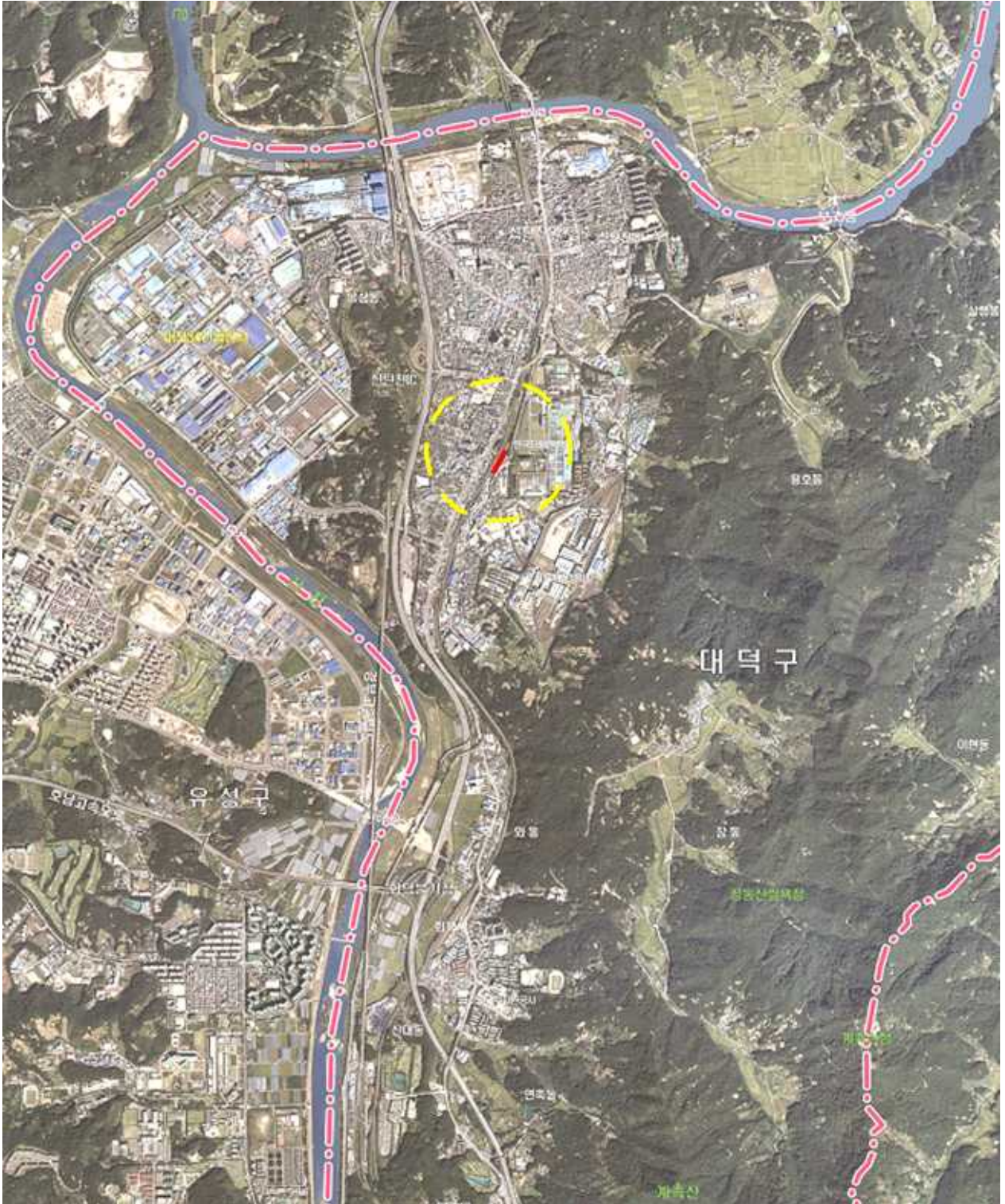
가. 토지 또는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전 대덕구 상서동	175-14	전	771.0	41.0	기획재정부					
2	대전 대덕구 상서동	175-2	천	2,981.0	1,461.0	국토교통부					
3	대전 대덕구 상서동	175-1	장	797.0	24.0	최경선 외 1인	세종시 보람동로 14, 804동701호				
4	대전 대덕구 상서동	801-55	장	215.0	12.0	최경선	세종시 보람동로 14, 804동701호				
5	대전 대덕구 상서동	178-6	답	167.0	14.0	오상영 외 1인	세종시 보람동로 14, 804동701호				
6	대전 대덕구 상서동	801-2	구	211.0	114.0	국토교통부					
7	대전 대덕구 상서동	178-2	답	160.0	152.0	대덕구					
8	대전 대덕구 상서동	178-5	천	1,056.0	180.0	국토교통부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전 대덕구 상서동	175-14	소나무	H=1.5m R=5cm	18주	전원식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51-23				

□ 위치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0년도 소하천(진골천 하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진골천	소하천 (진골천 하류) 정비사업	장동 240-7	장동 199-1	-	186	교량 재가설 1개소	'20. 3	'20. 12.	재해 예방	수용·사용 할 토지 및 물건 조서 별첨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계재생략)
2. 위치도 (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붙임)

※ 열람장소 : 대덕구청 건설과 (tel : 042-608-5223)

※ 열람기간 : 2020. 2. 21. ~ 2020. 3. 9.

소 하 천 정 비 시 행 계 획

○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소하천(진골천 하류)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소하천인 진골천천에 대하여 노후제방 등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 요 : 사업의 면적 2,120m², 연장 186.0m
- 위 치 : 대덕구 장동 199-1번지 일원

○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착공일 : 2020. 3.
- 준공일 : 2020. 12. 31.

○ 실시설계도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도시국 건설과에 비치

○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 사업비(재원 및 연도별)

구 분	재 원 별(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2020년도	400,000	400,000	-	-	

사 용 또 는 수 용 할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소하천(진골천 하류) 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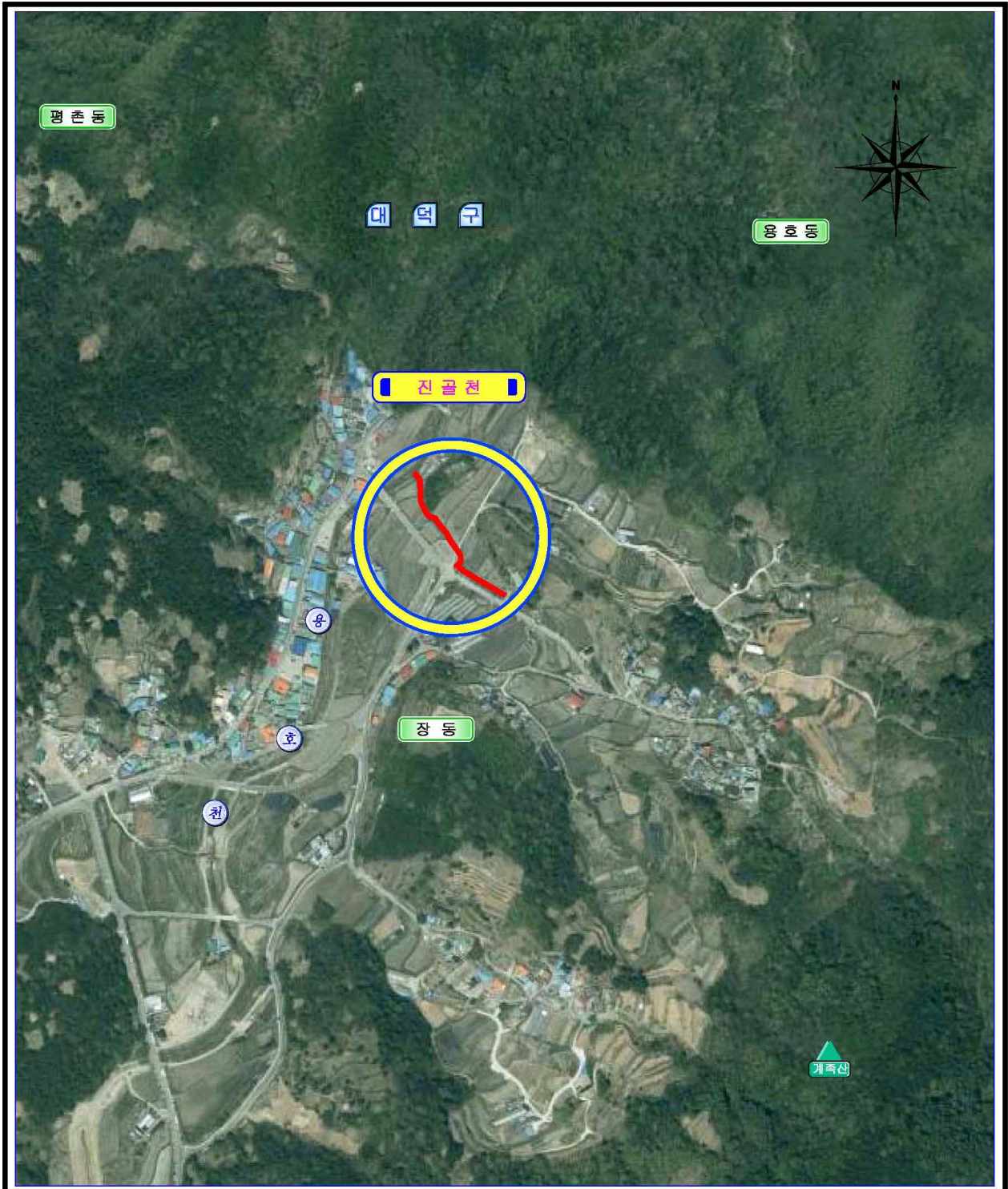
가. 토지 또는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전 대덕구 장동	144-5	도	1,075	33	대덕구					
2	대전 대덕구 장동	199-1	도	1,395	743	대덕구					
3	대전 대덕구 장동	201	답	447	26	송인빈	대덕구 장동로278번안길 9-1 0				
4	대전 대덕구 장동	201-2	도	3,000	27	대덕구					
5	대전 대덕구 장동	202-1	천	164	164	대덕구					
6	대전 대덕구 장동	203-1	답	720	18	송인용	대덕구 장동로278번안길 26- 24				
7	대전 대덕구 장동	203-3	천	222	161	대덕구					
8	대전 대덕구 장동	240-3	답	20	9	국(농림축산식품부)					
9	대전 대덕구 장동	241-3	천	41	41	대덕구					
10	대전 대덕구 장동	796	구	5,803	886	국(농림축산식품부)					
11	대전 대덕구 장동	811	도	96	8	국(국토교통부)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전 대덕구 장동	202-1	감나무	H=5.0m R=25cm	1주	송무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 5, 107동 4701호				
			감나무	H=2.0m R=6cm	1주						
			감나무	H=4.5m R=20cm	1주						
			배롱나무	H=1.5m R=3cm	1주						
			은행나무	H=3.5m B=8cm	1주						
			배롱나무	H=1.5m R=3cm	1주						
			대추나무	H=3.5m R=15cm	1주						
			감나무	H=3.0m R=10cm	1주						
			매실나무	H=4.0m R=20	1주						
			대추나무	H=4.0m R=20cm	1주						
			기념비	30x50cm	1식						
2	대전 대덕구 장동	796	감나무	H=2.0m R=6cm	1주	송인빈	대덕구 장동로278번안길 9-10				
			감나무	H=2.5m R=8cm	1주						

□ 위치도



2020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교사(기초학습분야) 채용 공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코자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2020년 신규 아동복지교사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근무형태

- 근무기간 : 2020년 3월 10일 ~ 12월 31일
- 채용인원 : 총 1명
- 근무유형
 - 전일근무 아동복지교사 (기초학습) : 1명
- 근무지 : 대덕구 오정, 주보라지역아동센터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교사 분야	활동내용	채용 인원	근무조건
기본분야 (전일제)	기초 학습	·기초학습교육 등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 부진아 지도) ·해당분야 수업 전·후 정리(숙제 및 과제물 관리 등)	1명	- (근무지) 오정, 주보라지역아동센터 - (근무시간) 주25시간/주 5일 1일 5시간

				09:00~21:00 내 - (급여) 1,126,000원(4대보험 가입)
--	--	--	--	---

3. 채용 기준

항목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기본 자격	공 통	1) 만 19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는 자
분야별 세부 기준	기초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또는 중등 학습지도 가능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나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대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 친족 운영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

4. 채용방법 : 공개채용

- 1차 서류심사 : 별도 평가표에 의해 적격자 선정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별도 평가표에 의해 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평가
- ※ 면접점수가 총점의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과락 처리됨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통보	면접시험일	채용예정자 합격자발표
2020.2.21.~ 2.28.	2020.2.26.~2.28.	2020.3. 2.	2020.3. 4.	2020.3. 5.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는 개별(유·무선) 통보

6. 참여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0. 2. 21.(금) ~ 2020. 2. 28.(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09:00~18:00 (업무시간 내)
- ※ 채용서류 접수 완료 이후에는 추가 서류 제출 및 보완 불가
- 접 수 처 : 대덕구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3층)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7. 제출서류

세 부 내 용	
기본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별지1) ②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별지2) ③ 최종학력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 ⑤ 경력증명서 ※ ①~③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 ④~⑤은 해당자만 제출

※ 첨부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8. 응시자 유의사항

- 참여신청서 경력사항 작성 시,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필히 기재
- 근무경력 등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여부, 경력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동의서는 채용예정자에 한해서만 조회 예정
- 본 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여성가족과 문의(608-6982, 6987)

【별지 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3×4)	
주 소					
핸드폰번호		수신동의	동의() 미동의()		
e-mail		수신동의	동의() 미동의()		
아동복지교사 참여경력(해당자)	<input type="checkbox"/> 2007년 <input type="checkbox"/> 2008년 <input type="checkbox"/> 2009년 <input type="checkbox"/> 2010년 <input type="checkbox"/> 2011년 <input type="checkbox"/> 2012년 <input type="checkbox"/> 2013년 <input type="checkbox"/> 2014년 <input type="checkbox"/> 2015년 <input type="checkbox"/> 2016년 <input type="checkbox"/> 2017년 <input type="checkbox"/> 2018년 <input type="checkbox"/> 2019년		최근 실적기간 (2020 신규교사해당)	년 개월	
◆ 지원분야 : 지원 하고자 하는 교사 분야 3개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표를 하고, 희망 우선순위를(1·2·3순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의 근무 가능 시간대를 모두 <input checked="" type="checkbox"/>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분야		우선 순위	근무유형		
			전일근무		
			(주25시간근무)	(주40시간근무)	단시간근무 (주12시간근무)
기본분야	기초학습	초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고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국어지도	초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고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독서지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체능지도	(분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학력사항(최종학력만 기재)					
기간	학교명	전공	졸업여부		
◆ 자격 및 면허					
자격증	취득연월일	발행기관	비고		
◆ 관련 경력사항					
기관명	기간	업무내용	비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① 본 신청서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여자의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안)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심사, 계약 체결 및 대기자 관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조사·연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자격, 건강보험증번호, 아동복지교사 참여경력, 최근 실직기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동의함 / □ 동의안함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12개월

□ 동의함 / □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동의함 / □ 동의안함

※ 신청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동의 여부	서명
	신청인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2】

기본분야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p>★ 지원분야와 관련한 프로그램 지도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계획을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1분기 수업 또는 10차시 프로그램 기준) ★ 내용이 많을 경우 다음페이지로 넘겨 작성 가능</p>			
지원분야(☑표기)	<input type="checkbox"/> 기초학습 <input type="checkbox"/> 외국어지도 <input type="checkbox"/> 독서지도 <input type="checkbox"/> 예체능지도(분야)		
프로그램 제목	-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 - -		
프로그램 지도기간 및 회기	○월~○월(○개월) 또는 ○차시		
프로그램 지도가능대상	<input type="checkbox"/> 초등저학년 <input type="checkbox"/> 초등고학년 <input type="checkbox"/> 중학생		
프로그램 지도계획	* 1분기 주별 또는 차시별 수업제목 및 지도방법 상세 기술		
	주별(차시)	수업제목	지도방법 및 내용
프로그램 기대효과			
프로그램 운영 자기 강점	* 간략한 자기소개 및 프로그램 지도 관련 강점 상세 기술		

도시계획시설(용전근린공원조성)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 견청취 열람공고

1.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대덕구 송촌동 일대의 용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용전근린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공원녹지과(042-270-5573), 동구청 공원녹지과(042-251-4753), 대덕구청 공원녹지과(042-608-5132)에 비치하오니 주민 등 이해관계자께서는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대덕구 송촌동 일원 129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명 칭 :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내 용 : 용전근린공원 공원조성

- 규 모 : 191,651㎡(공원면적 147,649㎡, 비공원면적 44,002㎡)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공동시행)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1420)

- 계룡산업(주) 대표이사 안석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5, 402호(월평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4. 4.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붙임 토지조서 참조”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09:00 ~ 18:00)

아.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서 작성 제출

자.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청 공원녹지과, 동구청 공원녹지과, 대덕구청 공원녹지과

차. 기타사항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미 수령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절차는 실시계획인가 후에 진행됩니다. 끝.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성 명	
1	송촌동	155	도	14	14	국토교통부		
2	송촌동	156	답	129	129	국토교통부		
3	송촌동	156-1	전	984	984	송* 호	*** 협동조합중앙회	
4	송촌동	156-2	전	32	32	송* 선		
5	송촌동	156-3	답	405	405	송* 호 외 1인		
6	송촌동	157-1	도	67	67	국토교통부		
7	송촌동	157-2	전	1,124	1,124	권* 일		
8	송촌동	157-3	전	58	58	은진송씨 *** 파종 중		
9	송촌동	157-4	전	32	32	은진송씨 *** 파종 중		
10	송촌동	157-5	전	1,576	1,576	박* 자		
11	송촌동	157-8	전	535	535	이* 목		
12	송촌동	157-9	전	701	701	이* 목	***** 농업협동조합	
13	송촌동	157-10	도	198	198	국토교통부		
14	송촌동	157-11	전	2,966	2,966	은진송씨 *** 파종 중		
15	송촌동	157-12	전	1,294	1,294	은진송씨 *** 파종 중		
16	송촌동	157-14	전	385	385	은진송씨 *** 파종 중		
17	송촌동	157-15	전	205	205	권* 일		
18	송촌동	158	도	8	8	국토교통부		
19	송촌동	163	도	73	73	국토교통부		
20	송촌동	163-2	도	6	6	국토교통부		
21	송촌동	165	대	3,668	3,668	대전광역시 대덕 구		
22	송촌동	165-3	답	112	112	대전광역시 대덕 구		
23	송촌동	166-2	전	311	311	대전광역시 대덕 구		
24	송촌동	166-3	전	638	638	대전광역시 대덕 구		
25	송촌동	166-4	답	1,173	1,173	대전광역시 대덕 구		
26	송촌동	166-5	답	131	131	대전광역시 대덕 구		
27	송촌동	167-2	전	50	50	대전광역시 대덕 구		
28	송촌동	167-3	전	324	324	대전광역시 대덕 구		
29	송촌동	167-4	전	213	213	대전광역시 대덕 구		
30	송촌동	168	전	397	397	이* 숙		
31	송촌동	168-1	전	850	850	선* 영 외1인		
32	송촌동	168-2	전	623	623	고* 혁 외 7인		
33	송촌동	168-3	도	7	7	신* 국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성 명	
34	송촌동	168-5	전	937	937	대전광역시		
35	송촌동	168-7	전	127	127	국토교통부		
36	송촌동	168-8	수	162	162	대전광역시		
37	송촌동	169-1	전	736	736	이* 희 외 1인	*** 농업협동조합	
38	송촌동	169-2	도	3	3	이* 형 외1인		
39	송촌동	169-3	도	60	60	대전광역시 대덕구		
40	송촌동	169-4	대	992	992	송* 석		
41	송촌동	170-1	답	25	25	대전광역시		
42	송촌동	170-2	도	75	75	대전광역시		
43	송촌동	170-4	답	10	10	대전광역시		
44	송촌동	171-7	대	6	6	한국수자원공사		
45	송촌동	171-10	대	17	17	대전광역시		
46	송촌동	229	전	782	782	김* 경	이* 훈	
47	송촌동	229-1	전	1,117	1,082	서* 일 외3인		
48	송촌동	230	전	120	120	서* 일 외3인		
49	송촌동	236	전	795	795	이* 숙		
50	송촌동	236-1	전	688	688	국토교통부		
51	송촌동	236-3	수	102,363	594	대전광역시		
52	송촌동	237	전	559	559	고* 혁 외 7인		
53	송촌동	237-1	임	7,844	7,444	고* 혁 외 7인		
54	송촌동	238	전	188	188	선* 훈 외 2인		
55	송촌동	239	전	470	470	선* 훈 외 2인		
56	송촌동	239-1	전	253	253	이* 환 외2인		
57	송촌동	239-2	전	1,586	1,586	선* 훈 외 2인		
58	송촌동	239-3	전	2,574	2,574	이* 환 외2인		
59	송촌동	239-4	전	3,190	3,190	선* 훈 외 2인		
60	송촌동	239-5	전	2,683	2,683	선* 훈 외 2인		
61	송촌동	239-8	전	305	305	이* 환 외2인		
62	송촌동	239-20	전	1,178	1,178	이* 환 외2인		
63	송촌동	239-26	전	130	130	이* 환 외2인		
64	송촌동	280	전	2,006	2,006	최* 일	***** 농업협동조합	
65	송촌동	280-1	전	2,538	2,538	김* 옥 외 3인		
66	송촌동	282	전	10	10	최* 일	***** 농업협동조합	
67	송촌동	282-1	전	764	764	강* 창 외 1인		
68	송촌동	282-2	전	1,633	1,633	최* 자		
69	송촌동	282-3	전	4,645	4,645	추* 엽		
70	송촌동	282-4	전	3,421	3,421	추* 엽		
71	송촌동	282-5	전	424	424	추* 엽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성 명	
72	송촌동	282-7	전	2,742	2,742	윤* 원 외 2인		
73	송촌동	282-8	전	2,261	2,261	윤* 원 외 2인		
74	송촌동	282-18	도	62	1	대전광역시 대덕 구		
75	송촌동	282-24	임	626	626	창녕성씨 ***** 파종중		
76	송촌동	282-25	임	5,677	5,420	창녕성씨 ***파종중 외 1인		
77	송촌동	282-31	전	11	11	대전광역시 대덕 구		
78	송촌동	282-36	전	13	13	대전광역시 대덕 구		
79	송촌동	282-40	임	88	1	대전광역시 대덕 구		
80	송촌동	283-1	전	382	207	신* 만		
81	송촌동	341	도	372	372	국토교통부		
82	송촌동	342	도	544	544	국토교통부		
83	송촌동	342-4	잡	3	3	대전광역시 대덕 구		
84	송촌동	372	임	231	231	대전광역시		
85	송촌동	515	공	888.1	2	대전광역시		
86	송촌동	산22-5	임	99	99	이* 원		
87	송촌동	산22-6	임	496	496	이* 원		
88	송촌동	산22-13	임	1,599	1,525	서* 선 외 2인		
89	송촌동	산24-5	도	529	297	국토교통부		
90	송촌동	산25-6	임	38,309	38,309	권* 옥		
91	송촌동	산25-14	도	1,653	1,653	국토교통부		
92	송촌동	산25-15	임	860	860	국토교통부		
93	송촌동	산25-18	임	917	522	국토교통부		
94	송촌동	산25-19	임	885	819	이* 숙		
95	송촌동	산25-23	임	4,647	4,647	대전광역시	한국전력공사	
96	송촌동	산25-25	임	692	692	대전광역시	한국전력공사	
97	송촌동	산26-1	임	237	237	은진송씨 ***** 파종중		
98	송촌동	산26-2	임	3	2	산림청		
99	송촌동	산26-4	임	298	298	은진송씨 ***** 파종중		
100	송촌동	산26-5	도	676	676	국토교통부		
101	송촌동	산26-7	임	12,203	12,203	은진송씨 ***** 파종중		
102	송촌동	산26-8	임	761	761	은진송씨 ***** 파종중		
103	송촌동	산26-9	임	4,001	4,001	은진송씨 ***** 파종중		
104	송촌동	산27	임	2,281	2,281	임* 찬 외 1인		
105	송촌동	산28-1	임	756	756	대한* 수교		
106	송촌동	산28-18	임	361	240	국토교통부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성 명	
107	송촌동	산28-26	임	61	34	대전광역시 대덕 구		
108	송촌동	산28-28	도	72	4	대전광역시 대덕 구		
109	송촌동	산28-29	도	41	3	대전광역시 대덕 구		
110	중리동	27-5	전	1,872	1,872	***** 증인		
111	중리동	산4-1	임	13,115	868	한국수자원공사		
112	중리동	산4-5	임	1,662	1,485	은진송씨 ***** 종중		
113	용전동	73-1	전	289	120	***** 건설		
114	용전동	75-1	대	83	83	***** 건설		
115	용전동	78-1	전	1,230	1,230	***** 유지재단		
116	용전동	78-2	전	393	393	***** 유지재단		
117	용전동	78-37	임	2,508	2,508	대전광역시 동구		
118	용전동	78-38	대	4,284	4,284	대전광역시		
119	용전동	202	도	158	58	국토교통부		
120	용전동	240-1	구	7	7	국토교통부		
121	용전동	240-2	구	56	56	국토교통부		
122	용전동	산2-6	임	24,850	23,876	***** 유지재단		
123	용전동	산2-7	임	198	112	김* 습		
124	용전동	산2-8	임	5,789	32	***** 유지재단		
125	용전동	산2-33	임	130	130	***** 유지재단		
126	용전동	산2-34	임	45	45	***** 유지재단		
127	용전동	산3-1	임	1,744	1,744	유* 선		
128	용전동	산3-2	임	6,289	6,289	***** 유지재단		
129	용전동	산3-21	임	109	109	***** 유지재단		
계				315,853	191,651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개정으로 시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용어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경관심의 대상 규모 등도 그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서 경관심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의 용어를 관련 규정에 따른 용어와 일치시킴
(안 별표 1 및 별표 2).

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중 유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인 공원 및 조경공사는 제외함(안 별표 1).

다.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자치구 건축허가(심의) 대상 규모에 맞추어 조정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3. 12. 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건축과(전화 : 042-608-5181, FAX : 042-608-3833, E-mail : nastory@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과 담당자 서원중 (전화 : 042-608-51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란의 제2호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제19조제1항 관련)

대상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총사업비가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조명공사2.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3. 총사업비가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 및 조경공사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p>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p>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p> <p>나. 2층 이하 건축물</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p>
중점경관관리 구역 건축물	<p>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인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p> <p>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인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p>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p>1. 건축공사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제19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조명공사 2. 하나의 사업이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 3.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 및 조경공사 </td> </tr> </tbody> </table> <p>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시설물은 제외</p>	대상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조명공사 2. 하나의 사업이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 3.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 및 조경공사 	<p>[별표 1]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제19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사업비가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조명공사 2.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 3. 총사업비가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 및 조경공사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td> </tr> </tbody> </table> <p>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시설물은 제외</p>	대상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사업비가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조명공사 2.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 3. 총사업비가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 및 조경공사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대상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조명공사 2. 하나의 사업이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 3.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 및 조경공사 																	
대상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사업비가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조명공사 2.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 3. 총사업비가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 및 조경공사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p>[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분류</th> <th style="width: 85%;">대상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관지구 건축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td> <td style="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td> <td style="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td> </tr> </tbody> </table>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생략)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p>[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분류</th> <th style="width: 85%;">대상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관지구 건축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td> <td style="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td> <td style="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공사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td> </tr> </tbody> </table>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현행과 같음)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공사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생략)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현행과 같음)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공사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관계법령

□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28.>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부칙 <조례 제5378호, 2019.12.2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 축물란의 제3호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12.27.>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제30조제1항 관련)

대상범위
1.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조명공사
2.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
3.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공원 및 조경공사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심의대상 건축물(제30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심의대상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중점경관관리 구역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가지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시가지 경관도로 변에서 가시되지 않는 증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공사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축물(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우수 공무원의 포상명과 포상시기를 변경·조정하고, 우수 부서 표창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포상의 효율성을 높이며,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우수 공무원의 포상명을 퇴직하는 공무원에서 퇴직(공로연수)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포상시기를 퇴직 당일에서 퇴직 당일 또는 공로연수 시작일로 조정함(안 제3조 및 별표).

나. 우수 부서 표창 대상을 장관 이상 기관 표창에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의 기관 표창까지 확대함(안 제3조 및 별표).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포상에 관한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안 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제 7호서식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3.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전화 : 042-608-6524, FAX : 042-608-3821, E-mail : kim
yu8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김유경(전화 : 042-608-65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정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간인 포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퇴직(공로연수)공무원: 퇴직 당일 또는 공로연수 시작일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
2. 상급기관, 공공기관 등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
3.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4.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기관 표창을 받은 경우
5.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 선발”을 “심사·선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상위직 보다는”을 “상위직보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직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경과되지”를 “경과하지”로, “징계요구”

를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요구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비위사실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사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제1항 중 “표창대상자”를 “포상대상자”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적심사대장)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의 심사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 중 “표창대상자”를 “포상대상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에 따른 부상 기준(제4조 관련)

1. 행정역량평가 우수 부서 표창

분 야	내 용	시상금 또는 부상
국·시비 확보	10억원 이상	5,000천원
	7억원 이상~10억원 미만	4,000천원
	5억원 이상~7억원 미만	3,000천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2,000천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500천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00천원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00천원
상사업비 확보	3억원 이상	5,000천원
	1억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	4,000천원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3,000천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000천원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1,500천원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000천원
	1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500천원
기관 표창	대통령 표창	700천원
	국무총리 표창	500천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300천원

※ 일상적인 국·시비 보조사업 등 제외

2. 그 밖의 포상

포 상 명	인 원	포상시기	대 상	시상금 또는 부상	비 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1명	12월	공무원	2,000천원	
모 범 공 무 원	2명	7월, 12월	공무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름	
으 뜸 공 무 원	4명	4월, 7월, 10월, 12월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효 행 공 무 원	1명	5월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공로연수)공무원	미정	퇴직 당일 또는 공로연수 시작일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공로패
공 무 원 배 우 자	미정	퇴직하는 공무원 포상 시	공무원 배우자		공로패
그 밖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포상	연도별 계획에 따름	수시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 유공 포상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위원회				
구 분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비위사실 유·무확인				
포상업무 담당자				

※ (담당자)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심 사 조 서

포상내역

포상명	훈 격	포상일자	선발인원	추천인원	비 고

주요 심사내용

포상명 (훈 격)	선발대상	제외대상

심의대상

소 속	직위(급)	성 명 (성별, 연령)	공적내용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개 요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성별, 연령)	근무연수	징계및 기서훈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개조식으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중전의 서식 7호에서 이동>

공 적 심 사 대 장

연번	연월일	안 건	심사내용			심사결과	소관부서	결 재	
			공적내용	직급	성명			서기	간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구청발전</u>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간인 포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포상종류 및 시기) ① (생략)</p> <p>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p> <p>1. ~ 4. (생략)</p> <p>5. <u>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퇴직 당일</u></p> <p>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p> <p>1. <u>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행정역량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구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였거나,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u></p> <p>2. <u>각종 특수시책 개발 등으로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u></p>	<p>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p> <p>-----</p> <p>-----</p> <p>-----</p> <p>-----</p> <p>제3조(포상종류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당일 또는 공로연수 시작일</u></p> <p>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p> <p>1. <u>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 구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u></p> <p>2. <u>상급기관, 공공기관 등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구재</u></p>

현 행	개 정 안
<p>3. <u>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u></p> <p>4. <u>공무원의 배우자로서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5. <u>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한 경우</u></p> <p>6. <u>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④ (생략)</p> <p>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u>심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u></p> <p>1. ~ 4. (생략)</p> <p>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p> <p>1. <u>상위직 보다는 하위직 우선</u></p> <p>2.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p>	<p><u>정확충에 기여한 경우</u></p> <p>3. <u>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u></p> <p>4.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기관 표창을 받은 경우</p> <p>5.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6.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 ----- <u>심사·선발</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상위직보다</u> -----</p> <p>2. (현행과 같음)</p> <p>③ ----- -----</p>

현 행	개 정 안
<p>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u>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u>경과되지</u> 아니한 사람 및 <u>징계요구</u> 중에 있는 사람</p> <p>2. <u>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관계 행정기관이 비위 사실조사 중에 있는 사람</u></p> <p>3. (생략)</p> <p>제6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u>표창대상자를</u>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운영한다.</p>	<p>-----.</p> <p>-----</p> <p>-----</p> <p>-----</p> <p>-----.</p> <p>1. <u>징계처분</u>-----</p> <p>----- <u>경과하지</u> -----</p> <p>----- <u>징계의결요구, 징계 처분요구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비위사실조사</u> -----</p> <p>-----</p> <p>2. <u>공·사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u></p> <p>3.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u>포상대상자</u>-----</p> <p>-----</p> <p>-----</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전 상 정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위원회는 운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8조(안전의 제출) ① 위원회에 제출할 공적심사 안전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총무 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u>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u></p> <p>5. <u>비위사실 유·무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u></p> <p>6. (생 략)</p> <p>② (생 략)</p> <p>제10조(회의록 및 심사대장) ① <u>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전별 심사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전제안자에</u></p>	<p>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8조(안전의 제출)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4.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적심사대장) <u>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의 심사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한다.</u></p>

현행	개정안
<p>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사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 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한다.</p> <p>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표창대상자</u>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 ----- ----- <u>포상대상자</u> ----- ----- ----- --.</p>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